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2. . . (제 회)	

청 소 년 활 동 진 흥 법 시 행 령
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여성가족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여성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안전·위생점검의 제도를 보완하고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및 청소년수련시설 배상책임보험의 보상금액을 다른 재난 보험의 수준으로 조정하며 국내 거주 외국인 증가에 따라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에 참여하는 외국인의 개인정보 수집근거 마련하는 한편 수련시설 안전기준의 모호한 표현을 명확히 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종합 안전·위생점검의 점검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별표1의2 비고에 명시된 점검방법을 본문에 명시하고 점검결과 공개방법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(안 제11조 제4항 신설, 제5항)
- 나.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등의 배상책임보험의 보상금액을 '22년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평가 결과 및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2005년 법 제정 이후 계속 유지되고 있는 현행 보상한도가 다른 법령에 따른 재난 보험금액과 약 2배 차이가 있어 동일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(안 제13조, 별표 2 상해구분 및 보험금액, 별표 3 휴유장애 구분 및 보험금액)
- 다. 국내 거주 외국인 증가에 따라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에 참여하는

외국인의 개인정보 수집근거 마련이 필요함(안 제33조의2제1항)
라. 수련시설 안전기준의 비상연락장치 등 모호한 표현을 명확히 할 필요
요가 있음(안 별표1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,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④ 종합 안전·위생점검은 제3항의 분야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·위생기준을 준수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.

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한 종합 안전·위생점검의 결과는 종합 안전·위생점검을 실시한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

제13조제2항제1호 중 “8천만원”을 “1억5천만원”으로 한다.

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여권번호의 경우에는 제8호”를 “여권번호는 제2호, 제8호만 해당한다), 외국인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는 제2호”로 한다.

별표 1 제3호 중 “비상연락장치를”을 “지자체, 병원, 경찰서, 소방서 등과 비상연락망을”로 하고, 같은 표 제13호 중 “따른”을 “규정된”으로 한다.

별표 2의 1급의 보험금액란 중 “1천500만원”을 “3천만원”으로 하고, 같은 표 2급의 보험금액란 중 “800만원”을 “1,500만원”으로 하며, 같은 표

3급의 보험금액란 중 “800만원”을 “1,200만원”으로 하고, 같은 표 4급의 보험금액란 중 “700만원”을 “1,000만원”으로 하며, 같은 표 5급의 보험금액란 중 “700만원”을 “900만원”으로 하고, 같은 표 6급의 보험금액란 중 “400만원”을 “700만원”으로 하며, 같은 표 7급의 보험금액란 중 “400만원”을 “500만원”으로 하고, 같은 표 8급의 보험금액란 중 “180만원”을 “300만원”으로 한다.

별표 2의 9급의 보험금액란 중 “180만원”을 “240만원”으로 하고, 같은 표 10급의 보험금액란 중 “120만원”을 “200만원”으로 하며, 같은 표 11급의 보험금액란 중 “120만원”을 “160만원”으로 하고, 같은 표 12급의 보험금액란 중 “60만원”을 “120만원”으로 하며, 같은 표 13급의 보험금액란 중 “60만원”을 “80만원”으로 하고, 같은 표 14급의 보험금액란 중 “60만원”을 “50만원”으로 한다.

별표 3의 1급의 보험금액란 중 “8천만원”을 “1억5천만원”으로 하고, 같은 표 2급의 보험금액란 중 “7천200만원”을 “1억 3,500만원”으로 하며, 같은 표 3급의 보험금액란 중 “6천400만원”을 “1억2천만원”으로 하고, 같은 표 4급의 보험금액란 중 “5천600만원”을 “1억500만원”으로 하며, 같은 표 5급의 보험금액란 중 “4천800만원”을 “9천만원”으로 하고, 같은 표 6급의 보험금액란 중 “4천만원”을 “7,500만원”으로 하며, 같은 표 7급의 보험금액란 중 “3천200만원”을 “6천만원”으로 하고, 같은 표 8급의 보험금액란 중 “2천400만원”을 “4,500만원”으로 한다.

별표 3의 9급의 보험금액란 중 “1천800만원”을 “3,800만원”으로 하고, 같

은 표 10급의 보험금액란 중 “1천500만원”을 “2,700만원”으로 하며, 같은 표 11급의 보험금액란 중 “1천200만원”을 “2,300만원”으로 하고, 같은 표 12급의 보험금액란 중 “1천만원”을 “1,900만원”으로 하며, 같은 표 13급의 보험금액란 중 “800만원”을 “1,500만원”으로 하고, 같은 표 14급의 보험금액란 중 “500만원”을 “1천만원”으로 한다.

별표 1의2의 비교를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 후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3조제2항의 보험금액은 2023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보험가입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전에 보험에 가입한 자로서 별표2 및 별표 3의 보상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2023년 6월 30일까지 같은 표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(감독기관의 종합 안전 · 위생점검 절차 등) ① ~ ③ (생략) <u><신 설></u>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한 종합 안전 · 위생점검의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. 1.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종합 안전 · 위생점검의 결과: 종합 안전 · 위생점검을 실시한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2. 제2항에 따라 실시한 종합 안전 · 위생점검의 결과: 여성가족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제13조(보험가입) ① (생 략)	제11조(감독기관의 종합 안전 · 위생점검 절차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<u>종합 안전 · 위생점검은 제3항의 분야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 · 위생기준을 준수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.</u>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한 종합 안전 · 위생점검의 결과는 종합 안전 · 위생점검을 실시한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 제13조(보험가입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보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. 이 경우 지급보험금액은 실손해액으로 하되, 사망의 경우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.

1. 사망의 경우에는 8천만원

2. ~ 6. (생략)

제33조의2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

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(해당 권한이 위임·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·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9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(여권번호의 경우에는 제8호만 해당한다)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
1. ~ 10. (생략)

② (생략)

②

1. ----- 1억5천만원

2. ~ 6. (현행과 같음)

제33조의2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

① -----

여권번호
는 제2호, 제8호만 해당한
다), 외국인등록번호(외국인등
등록번호는 제2호-----
-----.

1. ~ 10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	
연 락 처	(02) 2100 - 6262